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안내사항

긴급투자법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4/2562 호를 따름

2019 년 10 월 28 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4/2562 호 긴급투자법에 따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함

1. 긴급투자법의 자격요건에 맞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사는 투자촉진인증서에 프로젝트 추가 조건을 기록하고 투자촉진 요청자는 권리와 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을 따르는 투자촉진 요청서를 제출해야함
2. 긴급투자법의 자격요건에 맞지않는 사업
 - 2.1 다음과 같이 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활동범주에 해당하는 사업
 - 활동범주 1.7 깊은 해저어업
 - 활동범주 7.1.6.1 지상 국가간의 고속 신호 회로 서비스
 - 활동범주 7.3.1 육로 운송 사업
 - 활동범주 7.3.3 해로 운송 사업
 - 활동범주 7.3.4 항공 운송 사업
 - 활동범주 7.22.1 페리, 유람선 또는 유람선 대여 사업
 - 활동범주 7.28.4 의료환자, 의료진, 의료장비 운송사업
(항공, 육로, 또는 해로)
 - 2.2 투자촉진법을 따르는 특별 투자 촉진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활동범주 1.22 동물의 사료나 사료가 들어간 재료의 생산 사업
 - 활동범주 2.17 공적인 소비를 위한 건설 자재와 콘크리트 생산 사업
 - 활동범주 6.15 몸을 치장하는 제품 생산 사업으로 예를들면 비누, 샴푸, 치약, 화장품

활동범주 6.16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예를들면 소비용 플라스틱

활동범주 6.17 펄프나 종이로 만들어진 제품, 예를들면 종이 박스

활동범주 7.24 산업공장 건물 또는 제품 창고 개발

3. 긴급투자법의 요건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정 요청 제출일이 2019 년 9 월 20 일부터 2020 년 12 월 30 일까지이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적용

- 3.1 투자촉진 승인을 받았지만 투자승인 인증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긴급투자법의 요건에 맞는 프로젝트 수정 제출의 권한을 승인하지 않고 투자 승인 인증서를 받은 다음 단계이후로부터 이 내용을 적용

- 3.2 모든 단계에서 시간을 연장하지않고 투자인증서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긴급투자법의 요건에 맞게 프로젝트 수정 요청 제출을 할수있게 승인하며 위와 같은 수정이 있을경우 기계를 들여오는 시간과 프로젝트 착수 시작일을 연장시키며 이는 2020 년 12 월 30 일 이내에 수정 요청 제출을 함으로서 이행 가능

4.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투자촉진법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며 이후에 어떠한 경우든 변경사항이 있을시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날부터 프로젝트 착수 시작일까지의 기간내에 승인 단계에서 정해진 부분을 따르며 이는 권리와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에 맞는지 이후에 지사가 조사를 실시함

5. 지사는 권리와 혜택을 투자촉진법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데 이는 프로젝트 착수 단계의 조사후 프로젝트가 정해진 조건에 맞게 시작할수있다는 점을 확인해야함

6. "실제 투자"는 투자촉진법을 따르는데 이 점은 투자액이 토지비용과 순환자본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금 규정을 따르는 이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것으로 투자촉진요청을 한 날로부터 2018 년 12 월 30 일까지에 요청을 한것으로 한정

위와 같은 내용을 고시함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2019 년 11 월 19 일